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자치행정과

( 2016. 12. 6 )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1월 23일(수)
- 제 출 자 : 허정행 의원 외 8명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4일(목)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 제정이유 >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마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포구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구분함 (안 제4조)

다.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기부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라.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전문기술이나 능력을 소지한 재능기부자를 구에서 장려하고 지원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8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분류함
  - 안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음
  - 안제6조에서는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등을 규정함
  - 안제7조에서는 재능기부에 참여하거나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안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동(同)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단으로 빨간우체통상담봉사단, 영시니어봉사단, 이미용봉사단, 건강지도봉사단, 교육강사봉사단, 집수리봉사단, 북한이탈주민 봉사단이사단 등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자원봉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의견으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 매우 유사하여 오히려 자원봉사 활동 및 사업의 내용이 분산될 우려가 있고,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나눔을 장려하기 위한 나눔포털시스템(<http://nanumkorea.go.kr>)에서 재능기부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메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재능기부 관련 전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임.
- 검토의견으로 동(同) 조례안은 2016.11.25.~11.3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

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구분, 재능기부의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재능기부를 접수 및 관리 운영과 연계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관협력이 용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서비스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자원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재능기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공공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마포구에서는 2016. 11. 30.현재 70,94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238개 봉사단체에서 17,853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나눔포털 시스템(<http://nanumkorea.go.kr>)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을 분류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기 기술이라든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능관리가 단순봉사자와 혼용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재능 기부자를 단순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일반 자원봉사자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현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구로구만 제정을 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23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능기부자 현황을 보면 전문자원봉사단인 빨간우체통상담봉사단, 영시니어봉사단, 이미용봉사단, 건강지도봉사단, 교육강사봉사단, 집수리봉사단, 사회공헌봉사단, 법률상담, 전통매듭봉사단, 프랑스자수봉사단, 네일아트봉사단, 음악치료봉사단, 문인

화봉사단 등이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폭넓은 재능기부봉사자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문 재능이 필요한 수요자가 발생 시 나눔포털시스템에 재능기부 희망공고를 내서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재능기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전문자원봉사 단체와 개인 재능 기부자를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하여 재능 기부자(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등 구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재능기부에 참여하여 마포구 재능기부 문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조례 제 538호, 2003. 5. 6., 제정]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 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